22. 대구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19년 10월 2일

○ 발의의원 : 하병문, 강성환, 김대현, 김동식, 김원규, 김혜정, 박갑상, 임태상, 이만규, 장상수 의원

○ 회부일자 : 2019년 10월 8일

○ 상정일자 : 제27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19년 10월 17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하병문 의원)

□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 금융회사의 책무, 시민의 권리 및 책무(안 제3조~제5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사업 실시(안 제6조)

○ 지원사업 사업비 보조(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제8조)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하종선)

□ 제정취지

○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들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적법성 여부

○ 상위 법령과의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 검토사항

○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 금융회사의 책무와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음.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실시 근거와 사업비 보조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피해 예방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관련기관 협력 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제정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로부터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와 갈수록 다양한 형태로 고도화·정교화되고 있는 범죄수법* 및 인식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의 시급성과 정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최근 보이스피싱 수단은 전화·문자메시지(SMS) 뿐 아니라 메신저, 불법금융 사이트·앱, 간편송금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메신저피싱은 지인의 이름 및 프로필사진을 도용하고 어투를 모방하면서 접근하여 휴대폰고장 등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고 소액을 타인 계좌에 송금토록 요구해 피해 다수발생

** '18.9월 금감원 조사 결과 "검찰·금감원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준다.(35.2%)", "회사요구로 통장 등 양도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17.7%)"고 응답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인식 수준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대구 지역의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 평균 및 타 광역시 대비 증가율도 높은 편** 이어서 지역 내 피해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대구 지역의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발생현황 및 검거현황

구 분	발생건수(건)	피해액(억원)	검거건수(건)	검거인원(명)
2017년	668	62	886	1,179
2018년	929	103	916	1,341
2019년(~8월)	867	144	976	1,198
전년동기비 증가율(%)	230 (36.1%)	75 (108.7%)	284 (41.0%)	180 (17.7%)

** 2019년(~8월) 기준 전년동기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및 증가현황 비교

구 분	전국	대구	부산	울산	대전	인천
2019년(건)	25,845	867	1,351	731	1,022	1,516
2018년(건)	22,237	637	1,152	776	855	1,569
전년동기비 증감율	16.2%	36.1%	17.2%	-5.8%	19.5%	-3.4%

○ 본 조례안의 상위법률은 2011년 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정부는 2012년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오고 있음.

최근(2018.12)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하는 등 보이스피싱 확대에 대응하고 있음.

* 메신저 피싱 등 보이스피싱 수단별 대응 강화, 대포통장 사전예방·사후제재 강화, 보이스피싱 조직 엄정단속, 피해 구제절차 정비, 보이스피싱 방지 홍보·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인천·대전·광주 등 7개 지자체가 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관련 조례를 시행 중에 있으며,

대구시에서는 지난 6월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인 대구시-경북도-금감원-시 경찰청-도 경찰청 간 업무 협약을 맺고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노력을 추진키로 했고,

대구시 홈페이지 내 '보이스피싱 지킴이' 배너 설치, 전광판 및 홍보물을 통한 홍보, 맞춤형 소비자교육 시 관련교육 실시 등을 통해 피해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대구시에서는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다양한 시민 접점을 활용한 체계적인 피해예방 대책 마련 및 예산 확보, 최근 보이스피싱 실태와 성·연령 등 대상자들의 특성을 결합한 맞춤형 교육 실시, 관계기관과의 협력사업 발굴·시행 등을 통해 늘어나는 시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을 줄이고 조례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당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 없음.

6. 수정안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